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선불식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 강화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68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목적 규정 개정 및 선불식 체육시설업의 정의 신설	3
2. 선불식 체육시설업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 근거 마련	7
3.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등 가입 의무 부과	10
4.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 시 정산계획 제출 등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2. 24.
3. 회 부 일: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회원·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업자가 갑자기 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 나. 체육시설업자가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 현황 조사 및 긴급 안내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 다.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라.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리 이용료의 중도환불, 판매된 회원권의 잔여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정산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마. 정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목적규정 개정 및 선불식 체육시설업의 정의 신설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이 법의 목적에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추가하고, ② 선불식 체육시설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1조 및 제2조제6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촉진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선불식 체육시설업”이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한다.

다. 검토사항

먼저, 목적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조는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보증보험 등의 가입의무, 휴·폐업 시 정산계획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체육시설업자가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긴급 소비자보호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 따라, 이 법의 입법목적이 체육시설의 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명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법은 민간 체육시설업뿐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전체를 관장하는 법률로 개정안과 같이 목적을 수정하는 경우 그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선불식 체육시설업의 정의 신설과 관련하여,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업자가 갑자기 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하고, 선불식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에게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행법¹⁾은 체육시설업을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선불식 체육시설업은 이용료의 선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을 구분하는 것으로, 현행 법상 체육시설업의 분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개정안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을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업 이용은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이 선불식 체육시설업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체육시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선불이용료 보호를 위해 선불식 체육시설업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① 보증보험 등을 통한 보호 대상은 선불이용료에 해당되므로 “선불식 체육시설업” 및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선불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호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② 유사 발의안²⁾ 등을 참고하여 “3개월 이상” 이용료 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선불이용료를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25. 1. 6.)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25. 10. 4.)
제2조(정의) 6. “ <u>선불이용료</u> ”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료를 말한다.	제26조(보험 가입) 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u>선불이용료(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3개월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을 받는 대가로써 미리 지불한 이용료를 말한다)</u> 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선불식 체육시설업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 조치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피해자 현황 조사 및 긴급 안내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4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의3(긴급 소비자보호 조치)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현황 조사 및 긴급 안내 2. 시설 잠금장치 해제 요청 및 현장 보존 3. 회원권·계약서 등 증거자료 확보 지원 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관서와의 공동 대응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u>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	--

다. 검토사항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자가 통보 없이 폐업 또는 잠적하여 선불이용료 미환급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통보 없이 폐업 또는 잠적하여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① 피해자 현황 조사 및 긴급 안내, ② 시설 잠금장치 해제 요청 및 현장 보존, ③ 회원권·계약서 등 증거자료 확보 지원, ④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관서와의 공동 대응 등의 긴급 소비자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침익적인 행위로 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고, 개정안에 따른 조사는 잠금장치 해제, 증거자료 확보 등 강제수사를 전제로 하는바 피조사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행정조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등 가입 의무 부과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예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6조제2항·제3항 신설, 제30조제8호 및 제40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보험 가입) (생략)	제26조(보험 가입) ①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선불식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이하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라 한다)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u><신설></u>	③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 사실을 이용자에게 서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	제30조(시정명령)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26조에 따른 <u>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u>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6조에 따른 <u>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 5. ~ 7. (생략)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보험 또는 보증보험등에</u>----- 제40조(과태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보험 또는 보증보험등에</u>----- 5. ~ 7.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현행법³⁾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민간 체육시설업자에 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해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또는 시설 내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정안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잠적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①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증 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②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③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선불이용료를 납부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보증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 가입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전반적인 체육시설 이용료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선불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및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보증보험”을 “보험”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⁴⁾, ② 영세 사업자의 경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현재 보증보험 운용사는 1개소(SGI서울보증)인 점, 보증보험을 제외한 타 손해보험의 범위 내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한 점, 보험 의무화 등만 규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민간 서비스 개발 운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안심결제서비스[예: 킵페이(Keepay)] 가입 등 보험 가입에 상응하는 조치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안심결제서비스(Keepay) 개요]

- (개요) 안심결제서비스 ‘킵페이(Keepay)’ 앱 가입을 통해 체육시설 휴폐업에 따른 먹튀 발생 시 가입 개별 건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
- (기능) ① 사전 위험 고지 : 이용자에게 업체 경영정보* 제공(신용평가회사 빅데이터 연계활용 예정)
 - * 직원 급여, 제세공과금 미납 현황 등을 위험 징후 정보 제공
- ② 피해구제 : ‘먹튀’ 관련 체육시설 휴·폐업 보상 신청 시 타 시설 이용 연계 또는 잔여 이용금액 보상
- (운영, 현황) (주)Pay+, ‘24.9월 서비스 개시
- 200여 개소(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서비스 제공
- 지마켓 등에도 스포츠 이용권 판매 중(25.2월 현재)
- 킵페이 가입 이용료 3.3% 규모(시설업자 또는 이용자 부담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는 체력단련장업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과도하며, 낮은 비용으로 먹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안심결제서비스 가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에서도 관련 상품 개발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체육시설 선불이용료 반환 지급보증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아 상품 개발 검토 및 출시와 관련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한국골프연습장협회는 현행법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손해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보증보험등 가입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4.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의 휴·폐업 시 정산계획 제출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업·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료 및 회원권에 대한 정산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산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④ 정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휴업·폐업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29조 및 제40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용료의 중도 환불, 판매된 회원권의 잔여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정산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u>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신 설> <신 설>	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조치, 보완명령의 방법----- ----- -----. 제40조(과태료) ①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다. 검토사항

현행법⁵⁾은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

업·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업·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시 이용료의 중도 환불, 판매된 회원권의 잔여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정산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대한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회원

2.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를 미리 지급하고 이용 또는 교습 약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일반이용자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체육시설 선불이용료의 환급률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시설 이용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휴업·폐업 사실을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업·폐업 통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377